# 발전기병렬운전 및 공급방안 업무절차

# 1.0 목적

규칙 제5.8.5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전력계통과 연결하여 병렬운전하기 위한 업무 처리절차와 154kV 이상 전기사용자에 대한 공급방안검토 업무의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. <개정 2006.9.14>

#### 2.0 적용범위

- 2.1 병렬운전 업무절차는 전력계통에 상시 연계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발전기 중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신,증설발전기(이하 본 별표에서 "병렬운전발전기"라 한다)의 병렬운전 처리절차와 기술적 필요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업무에 적용한다. <개정 2025.7.10.>
  - 1. 자가발전설비 설치자에 의한 발전기
  - 2. 집단에너지사업법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설치한 발전기
  - 3. 전기사업법에 의거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발전기
  - 4. 전기사업법 부칙 제8조(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의 적용을 받는 기존 전력수급계약서(PPA)를 체결한 자가 설치한 발전기
  - 5. 분산에너지법에 의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발전기
- 2.2 공급방안 업무절차는 전기사용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공급방안 검토 업무에 적용한다. <개정 2025.7.10.>

#### 3.0 책임

- 3.1 전기판매사업자
- 3.1.1 병렬운전발전기 설치자가 발전기를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전하고자 병렬 운전 요청시 이를 접수하고 종합 처리한다.
- 3.1.2 154kV 이상 전기사용자에 대한 공급방안 검토의견을 전력거래소에 요청 한다.
- 3.2 송전사업자
- 3.2.1 병렬운전 요청 발전기에 대한 연계선로의 보호관련 업무를 주관하며, 병렬운전 발전기에 대한 접속처리 내역과 기술적 특성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.

- 3.3 전력거래소
- 3.3.1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병렬운전 발전기에 대한 기술자료를 검토한다.
- 3.3.2 154kV 이상 전기사용자에 대한 공급방안을 전력계통의 안정운전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시한다.
- 3.4 병렬운전 발전기 설치자
- 3.4.1 병렬운전 발전기측 수전반의 보호계전기에 대한 정정 및 시험을 수행하고, 송전사업자에게 정정검토서를 제출한다.
- 3.4.2 병렬운전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상시 연결하여 운전할 경우 전력계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송전사업자와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다.

## 4.0 참고자료

- 4.1 법, 시행령, 시행규칙
- 4.2 전력계통운영업무범위 고시
- 4.3 전기공급약관 및 동약관 시행규칙
- 4.4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

# 5.0 용어의 정의

- 5.1 발전기병렬운전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상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것.
- 5.2 Flicker 전압변동에 따라조명기기의 깜박임 등이 발생하는 현상
- 5.3 고조파 계통에서 전압 전류의 파형은 일정한 파형(정현파)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 나, 전기로와 같이 전력소비가 일정하지 않은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이들 기기로부터 나타나는 정현파 이외의 파형
- 5.4 차단용량 전력계통에서 단락고장이나 지락고장 등에 의해 발생되는 고장전류를 차 단할 수 있는 차단기의 차단능력
- 5.5 계약전력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부하
- 5.6 최대부하 하루, 일년 등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1시간 평균전력의최대인 전력 수요값

#### 6.0 지침

6.1 발전기 병렬운전 관련 보호업무 지침

## 7.0 발전기병렬운전 처리절차

- 7.1 전기판매사업자는 송전사업자와 상호 협조하여 병렬운전 접속관련 업무를 처리한다
- 7.2 송전사업자는 발전기 설치 자가 제출한 수전반 보호계전기 정정검토서에 대한 보호협조 등 기술검토를 수행하고,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의 보호방식은 발전기 설치자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. 단,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발전기의 연계선로 보호방식은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7.3 송전사업자는 병렬운전발전기 설치자가 전력계통망에 발전기 접속시 제출한 기술적 특성자료를 자료접수 후 2주일 이내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.
- 7.4 전력거래소는 병렬운전 예정인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술적 사항(전압, 주파수, 조류 등)과 계통운영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, 전력계통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 검토결과를 송전사업자에게 통보한다.
- 7.5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계통연계 발전기의 병렬운전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자료를 병렬운전 발전기 설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

#### 8.0 공급방안 업무절차

- 8.1 전력거래소 검토대상
- 8.1.1 154kV 이상 신·증설 전기사용자중 송변전설비의 신설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
- 8.1.2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이 100MW 이상인 전기사용자
- 8.1.3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이 조성됨에 따라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
- 8.2 공급방안 결정 처리절차
- 8.2.1 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는 8.1에서 정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소에 공급방안 검토를 의뢰하며. 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5.7.10.>
  - 가. 고객기본사항
  - 나. 전기사업자 공급방안(안)
  - 다. 전기사용 해당 년도 전력계통도
  - 라. 전기사용시 Flicker, 고조파 등의 발생여부
  - 마. 기타 필요사항
- 8.2.2 전력거래소는 기술적, 경제적으로 적합한 공급방안을 검토하여 전기사업 자에게 그 의견을 제시한다.
- 8.2.3 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최종 공급방안이 확정되면 전력거래소

- 에 확정된 공급방안을 통보한다. <개정 2025.7.10.>
- 8.3 공급방안 검토 기준일정
- 8.3.1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방안 검토의뢰 공문 접수일로 부터 4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. <개정 2025.7.10.>
- 8.4 전기공급방안 검토시 수행하는 기술검토
- 8.4.1 사용프로그램: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단,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 간 의미있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, PSS/E 프로그램의 결과를 우선한다. <개정 2015.9.30.>
- 8.4.2 과부하 및 계통전압 검토
- 8.4.3 필요시 차단용량 검토
- 8.4.4 기술검토를 수행할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DB file은 전력계통 중장기 계획시 적용하는 자료를 이용한다. <개정 2015.9.30.>
- 8.5 검토시 참고자료
- 8.5.1 예상최대부하 산정시 신증설 계약전력에 대한 수용율, 부등율 및 기타 전기사용자의 자연증가율 등은 고려하지 않은 동시 최대부하로 검토한다.
- 8.5.2 검토시점에서 기 검토된 고압이상 전기사용자의 공급방안이 있는 경우 그계약전력을 가산하여 예상최대부하로 산정한다.
- 8.5.3 송변전설비의 건설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 전기사용자의 수 용율, 부등율 및 부하 절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.
- 8.5.4 154kV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자는 인근의 변전소에서 인출하여 전력을 공급한다. 단, 불가피할 경우 신·증설 전기사용장소의 인근을 통과하는 154kV선로가 주요 간선계통이 아니고 계통보호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송전선로에서 잠정적으로 T-분기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.
- 8.6 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수전 시기나 전기사용 용량 등을 파악,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 공급설비의 장기 유휴 설비가 발 생되지 않도록 한다. <개정 2025.7.10.>